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인구급증 및 지역개발과 더불어 날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의 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기구 개편]

가. 실 ----- 증 1

1) 신 설 : 1실(기획관리실)

나. 담당관·과 ----- 증 3

1) 신 설 : 2담당관 1과(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시세과)

2) 명칭변경 : 기획실 ⇒ 기획담당관, 세무과 ⇒ 도세과

□ 검토의견

가. 법령적합성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인구가 20만이상 증가하는등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02조(행정기구) 내지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범위를 규정하는 『파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부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첫째, 「기획관리실」을 신설하여 하부조직으로 기존의 “기획실” 명칭을 변경한 「기획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등 3개 담당관을 두어 시정의 전반적인 기획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 둘째, 과단위 조직이 비대한 총무국 「세무과(8담당)」를 「시세과」와 「도세과」로 나누어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도모하는 등 모두 “1실·2담당관·1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산하조직의 일부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여부도 지난 8월 27일자로 시본청의 기구증설에 관한 도지사의 사전승인 [기획 12200-11832(02.08.27)] 을 득하였으므로 법령적합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지방자치법

제 102조 (행정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行政機構의 設置·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地方自治團體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내용타당성

- 행정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도모하고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지방자치법제 102조제2항)

-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조례안은
 - 첫째, 기획관리실에 “기획·감사·정보통신”등 3개담당관을 두어 현행 시정의 기획·조정·통제기능과 감사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총무국에 속한 전산·정보통신·통계사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며, 또한, 총무국소관인 파주시시 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와 투자법인의 지도감독 기능도 경영 행정의 종합기획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기획관리실로 조정 되었음.

 - 둘째, 총무국 세무과는 그동안 읍·면·동 업무 기능축소 방침에 따라 모든 세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 집중(8개담당)되어 이에 따른 지휘통솔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시세과』와 『도세과』로 기능을 배분하려는 것임.

- 따라서, 행정기구 신설(1실·2담당관·1과)에 따른 위와 같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은 내용 타당성면에 있어서도 기구의 신설취지나 합리적인 조직운영 목표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시행기구 개편내역 요도》

